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0. 2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13. 채우진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2025. 10. 13.
다. 상정일자: 제2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10. 2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채우진 의원】

가. 제안이유

- 2025년 8월 17일 창전동 소재 아파트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하도록 해 마포구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동 조례의 목적과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를 위한 구청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입법예고: 2025. 10. 2. ~ 10. 10. (제출된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①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채우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5년 8월 17일 창전동 소재 아파트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하도록 해 마포구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② 주요 개정내용

○ 제1조(목적)

-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를 통해 마포구민의 편익을 높이고, 안전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2조(정의)

-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상 전기자전거 포함.
- 충전시설: 이동수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충전기 포함 시설.
- 안전시설: 화재 예방 등을 위한 경보설비, 질식소화덮개, 소화기 등 포함.

○ 제3조(책무)

-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주민은 화재 예방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해 협조해야 함.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함.

○ 제5조(충전시설 설치)

- 구청장이 과충전 방지·과전류 차단 기능이 있는 충전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관련 단체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제6조(안전시설 설치)

- 충전시설 운영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지원도 가능함.

○ 제7조(홍보)

- 안전한 충전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구청장에게 부여함.

○ 제8조(협력체계 구축)

- 관련 기관, 법인,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충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제9조(시행규칙)

-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③ 개정내용 검토

○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 환경·재난예방·안전관리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자치입법권에 부합됨.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내 충전 인프라와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행위는 공공복리 증진과 주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정당한 사무로 해석됨.

○ 조례안의 기대효과

- 무분별한 충전으로 인한 화재 예방 및 질서 있는 충전문화 조성.
- 국민의 전동 이동수단 활용 편의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관련 법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 설치 대상지 및 우선순위 선정 기준, 사업자 선정절차, 수요조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또는 지침으로 명확히 해야 함.
- 충전시설 유지관리 책임주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예산 한도 및 사용에 대한 정산 기준등에 대한 조문 또는 규칙 보완 필요.
- 민간사업자와의 협력 시 위탁계약 또는 MOU 등 법적 장치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 관련 조례 제정 자치구 1개(양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및 공영주차장과 필요한 장소에 전기 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 (2021년 7개소(36대)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1개소(4대)만 운영중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법령 및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기기 특성상 충전시간이 2~5시간 소요되어, 도난·방치 우려 및 실효성 문제점 발생에 따라 소규모 거점 중심 설치, 민간 연계형 모델, 실증사업 후 확대 등의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실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와 예산 관리, 사업자 관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